

- 구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소통의 도시 • 사람이 중심에 서있는 교육복지도시 • 글로벌시대를 선도하는 창조도시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자족도시 •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예술도시 • 자연친화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건강도시



# 연수구보

구정 방향

함께 가꿔요!  
행복한 연수!

발행·편집인:연수구청장 / 발행처: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호 (우)406-120 ☎ 810-7072 / FAX 810-713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부록 제664호 2011. 12. 5.(월)

### 【고 시】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45호(지적기준점 성과고시) ..... 1
-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1-46호(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78호(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8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83호(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8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43
-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894호(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0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기준점의<br>번호 | 세계측지계좌표    |            | 중부좌표                    |           | 가리좌표   |           | 비고    |
|------------|------------|------------|-------------------------|-----------|--------|-----------|-------|
|            | X          | Y          | X                       | Y         | X      | Y         |       |
| 1744       | 536623.631 | 169073.889 | 436317.83               | 169003.59 | 78.45  | -19182.92 | 좌표재등록 |
| 1745       | 536540.046 | 169039.247 | 436234.24               | 168968.96 | -5.19  | -19217.40 | 좌표재등록 |
| 1747       | 536580.405 | 168913.931 | 436274.60               | 168843.64 | 34.97  | -19342.79 | 좌표재등록 |
| 2586       | 536797.319 | 168992.734 | 436491.51               | 168922.43 | 252.01 | -19264.34 | 신설    |
| 2587       | 536714.981 | 169112.038 | 436409.18               | 169041.74 | 169.86 | -19144.91 | 신설    |
| 2588       | 536671.446 | 169096.392 | 436365.65               | 169026.10 | 126.30 | -19160.48 | 신설    |
| 2589       | 536660.880 | 168943.410 | 436355.07               | 168873.11 | 115.49 | -19313.45 | 신설    |
| 2590       | 536710.405 | 168959.351 | 436404.60               | 168889.05 | 165.04 | -19297.59 | 신설    |
| 274        |            |            | 434857.05               | 171339.03 |        |           | 폐기    |
| 377        |            |            | 434712.51               | 170754.85 |        |           | 폐기    |
| 737        |            |            | 435269.06               | 171642.54 |        |           | 폐기    |
| 1017       |            |            | 435903.69               | 170646.54 |        |           | 폐기    |
| 1032       |            |            | 436035.61               | 170480.44 |        |           | 폐기    |
| 1275       |            |            | 435476.75               | 173230.65 |        |           | 폐기    |
| 1276       |            |            | 435562.27               | 173307.15 |        |           | 폐기    |
| 1282       |            |            | 435352.33               | 173037.19 |        |           | 폐기    |
| 1403       |            |            | 435352.33               | 169268.90 |        |           | 폐기    |
| 2296       |            |            | 435959.60               | 169917.12 |        |           | 폐기    |
| 2308       |            |            |                         |           | -75.50 | -19017.04 | 폐기    |
| 2373       |            |            |                         |           | 320.03 | -18882.31 | 폐기    |
| 2450       |            |            |                         |           | 521.92 | -19257.84 | 폐기    |
| 2455       |            |            |                         |           | 378.85 | -18955.93 | 폐기    |
| 기준점의 명칭    |            |            | 지적도근점                   |           |        |           |       |
|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            | 중부좌표, 가리좌표              |           |        |           |       |
| 토지소재지      |            |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           |        |           |       |
| 설치일 또는 폐기일 |            |            | 2011. 11. 4, 2011.11.30 |           |        |           |       |
| 표지의 재질     |            |            | 철재                      |           |        |           |       |
| 측량성과 보관장소  |            |            |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           |        |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23외 10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부여사유 | 도 로 명<br>고 시 일 | 도 로 명<br>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2.0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조서

| NO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3-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23  | 미부여        | 2009-07-09 | 경원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5,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8-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54  | 미부여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6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285   | 미부여        | 2009-07-06 | 고려 속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를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여 제명 | 원인재역    |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6-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180   | 미부여        | 2009-07-06 | 고려 속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를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여 제명 | 동춘역     |
|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27-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80    | 미부여        | 2009-07-06 | 고려 속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를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여 제명 | 동막역     |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지하 66  | 미부여        | 2009-05-14 | 송도국제도시의 위상반영                                   | 캠퍼스타운역  |
|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5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대로 지하 150 | 미부여        | 2009-05-14 | 송도국제도시의 위상반영                                   | 테크노파크역  |
|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57  | 미부여        | 2009-05-14 |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 지식정보단지역 |
| 9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155 | 미부여        | 2009-05-14 |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 인천대입구역  |
|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240 | 미부여        | 2009-05-14 |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 센트럴파크역  |
| 1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8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지하 334 | 미부여        | 2009-05-14 | 인천타워를 향하는 중심대로                                 | 국제업무지구역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19외 7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br>변경사유 | 도 로 명<br>고 시 일 | 도 로 명<br>부 여 사 유 |
|------|-------|---------------|----------------|------------------|
|      |       | 별 도 열 략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민원지적과(☎810-7986~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12.0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조서

| NO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 도로명주소<br>변경 사유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비고     |
|----|----------------------|---------------------|--------------------------|--------------------------|----------------|------------|--|--------|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산7,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2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152번길 4-19 | 출입구 오류         | 2010-06-24 | 동곡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산4-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17-1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지하 10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지하 10      | 출입구 오류         | 2009-07-06 | 인근에 위치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의 명칭을 인용하여 제명                | 문학경기장역 |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384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370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지하 368    | 출입구 오류         | 2009-07-06 | 고려 속종때 인예태후의 친정고를 소성현을 높여 경원군으로 승격시킨것에 유래하여 제명 | 신연수역   |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6   | 출입구 오류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13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4   | 출입구 오류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59-13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44   | 출입구 오류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7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5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2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46   | 출입구 오류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568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0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68   | 출입구 오류         | 2009-07-09 | 능허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4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2. 05.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8외 5건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
|       | 별 도 열 략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청 ○○○○과(☎000-000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조서

| NO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일  | 도로명폐지사유 |
|----|------------------------|------------|---------|
|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8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 2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10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 3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능허대로446번길 32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 4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4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 5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6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588번길 17 | 2011-12-05 | 건축물 멸실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 878호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226호) 됨에 따라 정보공개에의 청구가 없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는 사전정보공표 대상의 확대를 통하여 정보공개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일상적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5개 호 추가(안 제9조제1항 제8호부터 제12호)

- 행정정보의 공표 항목 중 1개호 수정(안 제9조제2항 제7호)
  -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로 수정
- 위와같은 공표대상의 공표시기 변경(안 제14조 “별표1” )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2. 20(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동춘동 923-5번지)
- 연 락 처 : 전화 810-7971, FAX 810-7109
-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실·과”를 “단·실·과”로 한다.

제3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에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표대상의 공표시기(제14조 관련)

| 일련<br>번호 | 공 표 내 용  | 공개<br>시기 | 비 고                    |
|----------|--|----------|------------------------|
| 1        | 중장기종합계획  | 수시       |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2        | 구청장 업무추진비  | 연4회      | 1월, 4월, 7월, 10월        |
| 3        | 제5조에 의거 심의된 정보공개 청구내용과 심의회의 결정사항   | 수시       |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
| 4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 수시       | 검사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
| 5        | 당해연도 업무계획  | 연1회      |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6        |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구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 연1회      | 조사결과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7        | 자체평가결과   | 연1회      | 최종평가 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
| 8        |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 수시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9        |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 수시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0       |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 수시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1       |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 수시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2       |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 수시       |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3       |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결과 보고서   | 수시       | 결재후 1개월 이내             |
| 14       |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 수시       | 계획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5       | 각종 용역 발주계획과 그 결과물  | 수시       | 계획 확정일과 용역완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6       | 구청에서 관리하는 교량, 지하보도 등의 시설 안전관리 유지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 수시       |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7       |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 현황   | 수시       | 예산 집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
| 18       | 총 공사비 1억원 이상 공사중 설계변경된 금액이 공사금액의 20%이상의 변경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된 공사의 설계변경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 수시       | 최종결재 후 1개월이내           |
| 19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수시       |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내           |
| 20       |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결과(구세)   | 수시       | 최종결재후 1개월이내            |
| 21       | 각종 위원회의 개최 내용과 그 결과<br>(위원회명, 개최일시, 개최장소, 회의개최 건명, 최종결과)                           | 수시       | 위원회 개최(의결)일로부터 1개월이내   |
| 22       | 공청회 결과보고서  | 수시       | 공청회 개최일로부터 1개월이내       |
| 23       |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수시       | 공개 확정일로부터 1주일이내        |

신·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현  | 행 | 개   | 정 | 안 |
|--|---|---|---|---|
|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 인천광역시연수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 제1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정보공개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1조(목적) ----- 「 <u>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u> 」-----<br>-----<br>-----<br>-----<br>-----<br>-----.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생략)<br>2.처리부서의 “장”이라 함은 구분청각 실·과, 직속기관, 동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1.(현행과 같음)<br>2. -----<br>-- 단·실·과, -----<br>---                               |   |   |
| 제3조(정보공개 원칙) 구가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 제3조(정보공개 원칙) -----<br>-----<br>-----<br>-----<br>-----<br>-----<br>다만, 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단, 제3호의 경우 청구인 이 공표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략)

<신설>

②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생략)

7. 1,000만원 이상 물품구매와 1,000만원 이상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내역

제9조(행정정보의 공표)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9.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0.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11.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12. 국회 및 지방의회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②-----  
-----  
-----  
-----  
-----  
-----.

1. ~ 6.(현행과 같음)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   |
|--|---|
| <p>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연수구제증명등수수료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p>제15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u>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8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시행 규칙의 관련 상위법령 인용 규정과 조문을 정비하고,
- 나.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변경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 제명을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 안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20:00 ~ 02:00”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로 변경.
  - 가정사업계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표시.

다. 안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구입하여 생활 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 표시.

라. 안 제4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

- 판매자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구입을 위한 공급대금 납부방법에 공급대금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방법 추가.

마. 안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 동일인의 신고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30건, 같은 날 같은 장소 10건 이내” 에서 “월 10건, 같은 날 같은 장소 2건” 으로 한다.

바. 용어의 변경

- “쓰레기봉투” 를 “종량제 봉투” 로 하고,
- “재활용가능폐기물” 을 “재활용가능자원” 으로 한다.

###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10, [www.yeonsu.go.kr/](http://www.yeonsu.go.kr/) 참조:청소행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사항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폐기물 종류별 배출방법)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시간에 배출하여야 한다.

1. 일반폐기물 : 분리보관 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 미관을 위하여 배출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자 집 앞에 배출하되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일이나 수거 휴무일에는 배출할 수 없다.
2. 가정사업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 가정 및 가내수공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송도자원환경센터 소각장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된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가정사업계용봉투에 담아 수거·운반 처리대행업체에 배출일시, 장소, 위치 등을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 가. 폐장판 · 페스티로폼 · 고무 · 피혁 · 합성수지 · 폐목재류 · 미용머리카락 · 인형 · 신발 · 장난감 · 가방 · 폐도배지 등 폐지류, 폐비닐 · 이불 · 의류 · 섬유 · 양탄자 등 폐섬유류, 건축 폐자재 중 가연성 폐기물, 동식물성 고형잔재물 등[가연성 폐기물]
  - 나. 유리 · 형광등 · 도자기 조각 등과 소각재, 광재, 분진, 오니 등[불연성 폐기물]
  - 다. 공사·작업,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5톤 이하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등[불연성 건설폐기물]
3. 재활용가능자원 : 조례 제6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수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한다.
4.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투명봉투 등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하며, 배출시간은 재활용가능자원과 동일하다.

**제3조(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등)** ① 종량제 봉투 및 대형 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문장, 봉투 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스티커에는 구의 문장, 스티커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전화번호 기타 불편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제작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서에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 봉투의 규격, 용도, 색상 및 재질 등은 별표 1과 같고,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제작사양은 별표 2부터 별표 7과 같다.  
⑤ 구청장은 도·소매 시장 및 매장 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한 후 생활폐기물 배출용 일반용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봉투를 제작·판매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공급)** ① 종량제 봉투와 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청장이 지정한 날에 판매소에 공급하며, 공급일이 법정공휴일 또는 임시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③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구입을 신청한 후, 공급대금 고지서나 가상계좌에 따라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대금을 시중은행(구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용봉투를 도로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골목길 청소 또는 우리 동네 대청소 등의 공공목적에 위하여 동장 및 사회단체장 등의 공공용봉투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판매소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편의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별표 8의 판매소 지정 기준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품질관리에 우려가 있거나 판매소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1. 고철, 폐휴지 등 고물수집상, 정육점, 기름집, 튀김집, 생선가게, 화학약품 취급소, 염색소, 연탄가게, 장의사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업소

2. 이동식건물, 무허가건물 등 점포의 설비 및 구조가 판매영업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3. 다방, 유흥업소 등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달리하는 업소
4. 그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판매소 지정신청 및 변경신고 등)** ①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 판매소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지정증을 신청일로부터 6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가 상호 또는 명의를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상호 및 명의를변경 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판매자가 폐업,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판매소 폐업(휴업)신고서를 판매소 지정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및 도장,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를 지참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신분증, 도장 및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소는 구청장이 교부한 판매소 지정증을 소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3. 판매소는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의 문구 및 내용, 모양 등을 변경하여 판

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소는 소비자가 파손되지 않고 오물이 묻지 않은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 판매소는 낱장 판매를 거절할 수 없다.
  6. 판매소는 기타 구청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판매에 관한 협조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 ② 판매자는 구청장이 제작·판매하는 것 외의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구입하여 판매 할 수 없다.

**제8조(판매소 지정 취소)** 구청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조례에 규정한 판매가격을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를 매점매석 행위 등 종량제 봉투 및 스티커 수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관련대장의 확인)** 구청장은 스티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관련 대장을 각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하여 작성토록 하고,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동장 등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관련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 봉투 수수료감면)** 동장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감면 대상자에 대하여 무료종량제 봉투를 배부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는 증거물 등을 확보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서면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화 등 기타의 방법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 신고 서식에 맞춰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수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포상금은 무단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적발일 현재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⑤ 동일인의 신고에 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월 10건 이내로 하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적발된 무단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은 2건으로 제한하여 지급한다.
- ⑥ 포상금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종량제 봉투의 규격·용도·색상 및 재질(제3조 관련)

### 1. 종량제봉투의 종류·규격

| 봉투용량(ℓ) | 봉투규격 (가로×세로/cm) |          | 종 류                |
|---------|-----------------|----------|--------------------|
|         | 일반형 봉투          | 끈 삽입형 봉투 |                    |
| 2       | 19×35.5         |          |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
| 3       | 22×39.5         |          |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
| 5       | 26×46.5         | 26×39    |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
| 10      | 33×56.5         | 33×49    |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
| 10      | 36×53.5         |          |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
| 20      | 42×69.5         | 42×62    | 일반용봉투,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 |
| 20      | 45×65.3         |          | 일반용봉투 중 재사용봉투      |
| 50      | 56×91.5         | 56×85    |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
| 60      | 60×97.5         | 60×90    | 가정사업계용 봉투          |
| 100     | 71×113.5        | 71×107   | 일반용봉투, 공공용 봉투      |
| 125     | 80×121.5        | 80×112   | 가정사업계용 봉투          |

※ 봉투규격은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을 포함한다.

- 실제 사용할 쓰레기봉투 제작시에는 봉투 상단에 봉투 용량에 포함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형봉투 여분의 길이 계산식

$$\text{여분의 길이(cm)} = \frac{\text{가로길이(cm)}}{\pi} + 5\text{cm}$$

- 여분의 길이는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끈 삽입형 봉투규격 계산식

- 근거 : 한국플라스틱 표준
  - 봉투의 너비 : 기존 봉투 규격기준 적용
  - 봉투의 길이 :  $[\{\text{반지름}(r) \times \text{반지름}(r) \times \pi\} \div \text{봉투용량}] + \text{지름}(d)$

### 2. 규격봉투의 색상 및 재질

| 구 분 | 공공용 봉투                  | 일반용 봉투                  | 음식물류폐기물<br>전용봉투         | 가정사업계용 봉투      |
|-----|-------------------------|-------------------------|-------------------------|----------------|
| 색 상 | 청 색<br>(투명 또는<br>엷은 색상) | 백 색<br>(투명 또는<br>엷은 색상) | 녹 색<br>(투명 또는<br>엷은 색상) | 황 색            |
| 재 질 |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저밀도 폴리에틸렌  |                         |                         | 선형저밀도<br>폴리에틸렌 |





[별표 4] 재사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 모 형 도 ( )

## 재사용 종량제 봉투( )

장바구니로 이용 후 종량제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

쓰레기 봉투는 내 집(상가) 문 앞에 저녁에 배출  
하셔야 수거합니다.

▶ 쓰레기 종류별 배출 일자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일반<br>폐기물 | 재활용품<br>및 연탄재 | 일반<br>폐기물 | 일반<br>폐기물 | 일반<br>폐기물 | 배출<br>금지 | 일반<br>폐기물 |

종량제 봉투 외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품질인증 표시 및 제작사양

[별표 5]

## 가정사업계용봉투의 제작사양(제3조 관련)

|        |  |        |   |
|--------|--|--------|---|
| 25cm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30cm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72.5cm | <p style="text-align: center;"><b>구의 문장</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량제봉투(60ℓ)</b></p> <p style="text-align: center;">— — 가정사업계용 — —</p> <p>1. 처리 대상 폐기물<br/>-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류, 페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p> <p>2. 처리요령<br/>-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p> <p>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b></p> <p><input type="checkbox"/> 처리업체 :</p> <p><input type="checkbox"/> 문의처 :</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품질인증표시</div> | 91.5cm | <p style="text-align: center;"><b>구의 문장</b></p> <p style="text-align: center;"><b>종량제봉투(125ℓ)</b></p> <p style="text-align: center;">— — 가정사업계용 — —</p> <p>1. 처리 대상 폐기물<br/>-고무, 피혁, 섬유, 폐도배지, 장판지, 카페트, 건축폐자재류,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류, 페비닐, 머리카락 등 매립지 반입 불가 폐기물</p> <p>2. 처리요령<br/>-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에 담은 후 아래 처리업체로 전화를 하여 배출된 장소의 주소를 알려주시면 수거를 합니다.</p> <p>3. 상기 폐기물을 이 봉투로 버리지 않는 경우 수거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b></p> <p><input type="checkbox"/> 처리업체 :</p> <p><input type="checkbox"/> 문의처 :</p> <div style="text-align: right;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품질인증표시</div> |
|        | 60cm   |        | 80cm  |

##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문안

← 100 mm →

|  |
|--|
| <b>대형폐기물 스티커</b> (배출자용)                                    |
| 금액 (                      원권)                              |
| 110304993120000001 <구입일:    년    월    일>                   |
| <b>대형폐기물 스티커</b> (부착용)                                     |
| 금액 (                      원권) <구입일:    년    월    일>        |
| ■ 동별 수거요일 전날 저녁시간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b>해당건물 문 앞에</b> 배출하셔야 수거합니다. |
| ※ 품목별 수수료 기준보다 낮은 금액의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수거하지 않습니다.               |
| ※ 배출 시 위탁업체 수거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 ◆ 동별 수거요일 및 수거담당자 전화번호는 스티커 판매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 수거위탁업체: ㈜송도환경 ☎820-7322                                  |
| ■ 환불 및 교환(가급적 30일 이내)은 미사용 스티커로 훼손이 없어야 가능하며 구입처로 연락 바랍니다. |
| 기타불편사항은 청소행정과 ☎810-7327로 문의 바랍니다.                          |
| 110304993120000001   |
| <b>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b>  |
| <b>대형폐기물 스티커</b> (수거업체용)                                   |
| 금액 (                      원권)                              |
| 110304993120000001   |
| <b>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b>  |

180mm ↓

바탕색상

- 일천원권 : 주황색 ,    삼천원권 : 청색
- 오천원권 : 보라색 ,    일만원권 : 초록색

[별표 7]

## 공공용봉투의 제작사양 (제3조 관련)

|        |   |
|--------|---|
| 22.8cm | 이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 68.7cm | <p>구의 문장</p> <h3>공공용봉투(50ℓ)</h3> <p>--- 공공용 ---</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이 봉투는 공공용봉투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li><li>2. 이 봉투는 도로변 및 골목길 등의 청소에서 발생된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합니다.</li><li>3. 가정 및 사업장 등에서 이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ol> <p>※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p> <h3>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h3> <p>문의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10px auto;">품질인증 표시</div> |
|        | 56cm  |

※글씨색은 봉투색과 대조되는 색을 사용

※상기 사양은 50ℓ 봉투의 표준 사양임

[별표 8] 판매소 지정기준(제5조 관련)

| 구 분   | 지 정 기 준   |
|-------|---|
| 일반판매소 |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한하지 아니하는 업소  |
| 구내판매소 | <p>1. 구내판매소는 3층 이상 고층건물,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백화점, 대형소매점(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마켓, 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p> <p>2.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이용인원 등을 참작하여 동일시설물 내부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p> |
| 임시판매소 |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

[별표 9]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11조 관련)

(단위 : 원)

| 지급대상별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액   | 신고포상금   |
|--|-----------|---------|
|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0,000   | 30,000  |
|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   | 50,000  |
|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0,000 | 100,000 |



(종량제 봉투·스티커)판매소지정증

①지 정 번 호 :

②상 호 (명칭)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성명(대표자) :

⑤생년월일 :

⑥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량제봉투·스티커)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변 경 사 항

| 년 월 일 | 변 경 내 용 | 확 인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 업 상 유 의 사 항 ▷

1. 인천광역시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종량제 봉투·스티커) 진열장의 내·외부는 항상 깨끗이 정리·정돈하여야 하며 소비자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3. (종량제 봉투·스티커) 공급을 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공급하려할 경우(불법 제작·유통 사례 예방)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판매소의 위치 변경 시에는 신규로 판매소를 지정받아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대장

| ①<br>구입일자 | ②<br>성명 | ③<br>배출장소 | ④연락처<br>(핸드폰)    | ⑤<br>배출품목 | ⑥스티커<br>구입금액   | ⑦비고<br>(배출 일자,<br>세부적인<br>버릴 장소 등) |
|-----------|---------|-----------|------------------|-----------|--|------------------------------------|
| 년 월 일     |         |           | · 집전화:<br>· 핸드폰: |           | · 일천원권: 매 · 삼천원권: 매<br>· 오천원권: 매 · 일만원권: 매<br>※총액 :                    원 |                                    |
| 년 월 일     |         |           | · 집전화:<br>· 핸드폰: |           | · 일천원권: 매 · 삼천원권: 매<br>· 오천원권: 매 · 일만원권: 매<br>※총액 :                    원 |                                    |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대장 기입은 본인이 직접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티커 중 ‘수거업체용’ 은 판매소에서 구매대장과 보관하고, 주민에게는 ‘배출자용’ 과 ‘부착용’ 만 주시기 바랍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품목과 구입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수거처리가 불가능하오니, 부족 금액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 ① 구입일자 : 스티커를 구입한 날짜를 적어 주십시오.
- ② 성명 :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람의 성명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③ 배출장소 : 폐기물을 내놓는 장소의 주소지를 기재하십시오.
- ④ 연락처 : 집 전화 번호 및 핸드폰 번호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⑤ 배출품목 : “품목별 가격표” 에 의거, 배출하실 품목을 상세히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⑥ 스티커 구입금액 : 구매한 스티커 매수 및 총액 금액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⑦ 비고 : 특별히 수거업체 담당자에게 알려줄 사항(예 : 배출할 날짜, 이사하는 경우 이사 가는 날짜, 주소지가 어려운 장소인 경우 세부적인 배출장소 등)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7호 서식]

## 공공용봉투 수불대장

(단위 : 매)

| 일 자 | 수령 내역 |      |       | 수령인 | 공 급 내 역 |      |       | 적 요<br>(공급대상, 구체적 사용용도 등) | 잔 량 |      |       | 결 재 |     |     |
|-----|-------|------|-------|-----|---------|------|-------|---------------------------|-----|------|-------|-----|-----|-----|
|     | 계     | 50 ℓ | 100 ℓ |     | 계       | 50 ℓ | 100 ℓ |                           | 계   | 50 ℓ | 100 ℓ | 담당자 | 주 무 | 동 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9호 서식]

### 무단투기 신고 관리대장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신고자 |      |    | 신고내역 |      | 과태료 |     | 포상금지급내역 |     | 비고 |
|------|------|-----|------|----|------|------|-----|-----|---------|-----|----|
|      |      | 성명  | 주민번호 | 주소 | 신고방법 | 신고내용 | 부과일 | 수납일 | 계좌번호    | 포상금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2011-8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1월 30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 구축은 물론 평가역량 강화로 양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평가대상(안 제1장 제5조)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

### 나. 평가절차(안 제2장)

- 매년 평가지침과 평가계획 작성·실시
- 연1회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실시
- 평가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 다. 평가결과의 활용(안 제3장)

-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상황 확인·점검 실시

- 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032-810-7310, [www.yeonsu.go.kr/](http://www.yeonsu.go.kr/) 참조:청소행정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사항
- 라. 제출서식

| 제 정 (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정(안)

# 인천광역시연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제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규정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 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과 시민 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수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가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포함)가 평가대상 업무에 해당된다.

##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에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시정명령,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포함)
4. 그 밖의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등)**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에 통보해야 한다.

③ 평가대상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시민단체 회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으로 각 평가대상별로 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및 주민만족도 조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6조에서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대상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에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기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 이상 업체에 대하여 차기 수의계약 시 사업구역 확대 또는 기간 연장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시 또는 사전적격심사 시 일정 점수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고,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미흡 이하 업체에 대하여 차기 수의계약 시 사업구역 축소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공고 제2011 - 89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12월 2일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취업정보센터 설치가능 장소의 범위 확대
  - 구청 청사내 ⇒ 연수구 관내
- 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에 한정된 정보망의 범위를 확대
- 다. 취업정보센터 근무자 보강
  - 취업정보센터 기능강화에 따른 인력 증원(상담사 5, 전산요원 1)

#### 2. 주요내용

- 가. 운영부서 명칭 변경(제2조)
  - “고용안정”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일자리지원”의 구체적 의미로 변경함

나. 센터의 설치 가능 장소 범위 확대(제3조제1항)

센터의 설치장소를 “구청 청사내” 에서 “연수구 관내” 로 설치 가능범위를 확대함

다. 센터의 기능 중 전산정보망의 이용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2호)

- 센터에서 사용하는 고용안정정보망의 범위를 고용노동부의 Work-Net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고용안정정보망을 이용하도록 함

라. 전담인원의 증원(제4조)

- 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2명의 상담인력을 업무분야별로 6명(일반상담2, 청년상담 등1, 일자리발굴2, 전산DB구축 및 관리1)으로 증원하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함

마. 전담인원 증원에 따른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 전담인원 중 전산요원이 포함되어 “상담원” 을 “상담원 등” 으로 변경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1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락처 : 전화 810-7375, FAX 810-7389

○홈페이지 : <http://www.yeonsu.go.kr>

## 라. 제출서식

| 개 정(안) | 사 유(구체적으로)     |
|--------|----------------|
|        |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 3. 참고자료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취업정보센터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고용안정” 을 “일자리지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청 청사내” 를 “연수구 관내” 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용안정정보망 이용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상담원 및 전산요원의 배치) 센터에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 “상담원 등” 이라 한다)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제5조 중 “(상담원의 채용 등)” 을 “(상담원 등의 채용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상담원” 을 “상담원 등” 으로 한다.

제6조 제목 및 본문 중 “상담원” 을 “상담원 등” 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운영) 센터는 <u>고용안정</u>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 제2조(운영) ..... <u>일자리지원</u> .....  |
| 제3조(설치 및 기능) ①센터는 <u>구청 청사내에</u> 두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u>연수구 관내에</u> .....  |
| 1.(생략)   | 1.(현행과 같음)  |
| 2. <u>고용안정정보망(Work-Net)운영 관리</u>   | 2. <u>고용안정정보망 이용</u>  |
| 3.~7(생략)   | 3.~7(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제4조(상담원의 배치) 센터에는 2명 이하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인 민간직업상담원(이하 “상담원”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제4조(상담원 및 전산요원의 배치)센터에는 5명 이하의 민간직업상담원과 1명의 전산요원(이하 “상담원 등” 이라 한다)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
| 제5조(상담원의 채용등)①상담원은 공개 모집하여 채용하되, 채용방법 및 임용절차, 자격기준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제5조(상담원 등의 채용등)①상담원 등은 .....  |
| 제2항(생략)  | 제2항(현행과 같음)   |
| 제3항구청장은 <u>상담원이</u>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이하생략)   | 제3항구청장은 <u>상담원 등이</u> .....<br>(이하 현행과 같음)  |
| 제6조(상담원의 보수) 상담원의 보수에 관하여는(이하생략)   | 제6조(상담원 등의 보수) 상담원 등의 보수에 관하여는(이하 현행과 같음)   |
| 제7조(생략)  | 제7조(현행과 같음)   |